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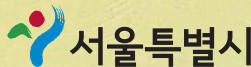


서울에서 함께 마을하기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활용설명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활용설명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활용설명서

-서울에서 함께 마을하기-

서울특별시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 활용설명서

-서울에서 함께 마을하기-

- 1판1쇄 인쇄 2013년2월5일
- 1판1쇄 발행 2013년2월8일
- 발행일 2013년2월8일
- 발행인 박원순
- 발행처 서울특별시
- 지은이 김이준수 이경희 전동수 황상운
- 편 집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 디자인 북디앤에스

본 출판물은 비매품이며,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본 출판물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홈페이지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트위터 @seoulmaeul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maeul

_INTRO

안녕하세요. 마음입니다.

이웃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마음이 시작하듯, 마음공동체 매뉴얼도 그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뉴얼의 틀을 조금 벗어 이렇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마음에 어긋리는 대화법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마음을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우리는 마음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웃이에요.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편하고, 친근하게 매뉴얼을 정리했습니다. 머리에 남으면서도 차갑지 않은 매뉴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제 첫 돌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첫 발을 딛고 있습니다. 마을지향행정이 이렇게 모든 행정을 아우르며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마을 정책과 사업은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걷는 길 하나하나가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삐뚤빼뚤하겠지만, 결국 그 길은 마을이라는 한 방향을 향해 가지런히 모아질 것입니다. 시민, 공무원, 활동가 모두를 아울러 각자가 겪는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사업이 가다듬어지고 정교해지고, 그만큼 활용설명서도 더욱 충실해지겠지요. 사람 사는 마을에는 사람 사는 재미가 있어요. ‘서울 마을공동체’, 같이 살고 싶은 사람, 더불어 살고 싶은 사람, 그래서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도 생각하는 당신과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이 책은 모두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세션별 구성을 참조하세요.

• Part I. 함께 살아요. 마을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지향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마을공동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형화된 마을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그에 따른 주요 사례도 확인하세요.

- **Part II. 함께 해봐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범위와 사업추진절차, 신청서 작성법 등 마을공동체 사업신청과 처리에 관한 디테일이 담겨있습니다. 그래도 복잡하고 어렵다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만 기억하세요.

- **Part III. 함께 보아요. 부록자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신청양식의 샘플과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보조금 회계처리 방법과 기준자료 등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용과 범주, 예산집행 등을 규정하는 법령도 있으니 필요할 때 속속 찾아보세요.

본 책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무 담당공무원과
기존의 마을활동가, 마을을 하고 싶은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 차

Intro

안녕하세요. 마을입니다. 03

Part I 함께 살아요.

마을공동체 09

1. 마을공동체가 뭐예요? _마을공동체 소개 _11
2. 마을공동체, 뭐부터 알아야 하죠? _마을공동체 개념어 사전 _13
3.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_마을공동체로 가는 방법 _25
4. 서울에도 마을이 있나요? _서울시 마을공동체 사례 _40

Part II 함께 해봐요.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47

1. 서울은 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까요? _배경 및 목적 _49
2.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_사업 내용 _55
3.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_사업 참여방법 _59
4. 한 번에 쉽게 도움받는 방법은 없나요? _지원센터 사용설명서 _76

Part III 함께 보아요.

부록자료 91

1.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_신청양식 샘플 _93
2. 보조금 회계처리가 어렵다면... _보조금회계처리 기준 _101
3.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싶다면... _참조법령 _124
4. 우리동네 가까운 마을공동체를 알고 싶다면... _마을넷 연락처 _137



Part I

⋮

함께 살아요. 마을공동체

⋮

1. 마을공동체가 뭐예요? _마을공동체 소개
2. 마을공동체, 뭐부터 알아야 하죠? _마을공동체 개념어 사전
3.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_마을공동체로 가는 방법
4. 서울에도 마을이 있나요? _서울시 마을공동체 사례

1. 마을공동체가 뭐예요?

마을공동체라는 말,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국어사전을 들춰보면 마을은 시골의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촌락, 부락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이자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되기보다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지에 대한 스스로 묻고 답하기.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식의 사회는 결국 누구나 살기 힘들며,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게다가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이웃관계나 마을, 지역 등 경쟁이 어울리지 않는 관계도 많다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회사와 같은 조직이건, 학교건, 많은 사회 조직은 본디 서로 돕고 모자란 부분을 서로 보충해주는 동료 같은 공동체이지 않았는가."

이윤과 경쟁보다 더 중요한 삶의 작동원리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종종 '관계'를 통해 만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을공동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집을 중심으로 한 장소성에 얽매이지 않는 현대적 의미로서 관계를 중심으로 공통의 문제를 상호연대와 상호부조로 해결해가고, 그것이 더욱 지역적 기반으로 이뤄진다면 그게 마을인 것이지요. 따라서 마을은 행정구역으로 딱 부러지게

나뉘지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동 단위의 주민들이 마을을 이룰 수도 있고, 행정구역을 넘나들 수도 있어요. 규모도 천차만별, 가지각색이 될 수 있죠. 마을을 느끼고 형성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골목에 모여 사는 서너 가구가 마을을 이룰 수도 있고요. 수천 명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한 마을이 될 수도 있어요. 관건은 어떻게 관계망을 형성하는지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경계는 느슨해요. 경계 자체가 불분명한 거죠.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경계도 모호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구성원이 됐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전통적인 마을과 다른 지금의 마을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의 형태는 하나로 규정지을 수 없어요.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며, 무엇보다 사람(주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을공동체는 따라서 해당 마을과 주민의 특징과 필요에 의해 규정될 수 있어요. 다음을 한 번 보세요. 다양한 관계망으로 엮인 마을공동체의 예시입니다.

-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마을공동체
 -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 마을공동체
- 세대를 넘어 살고 싶은 생태 순환 마을공동체
 - 생활과 일자리가 통합된 마을공동체
- 마을일꾼을 발굴 양성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마을공동체
 -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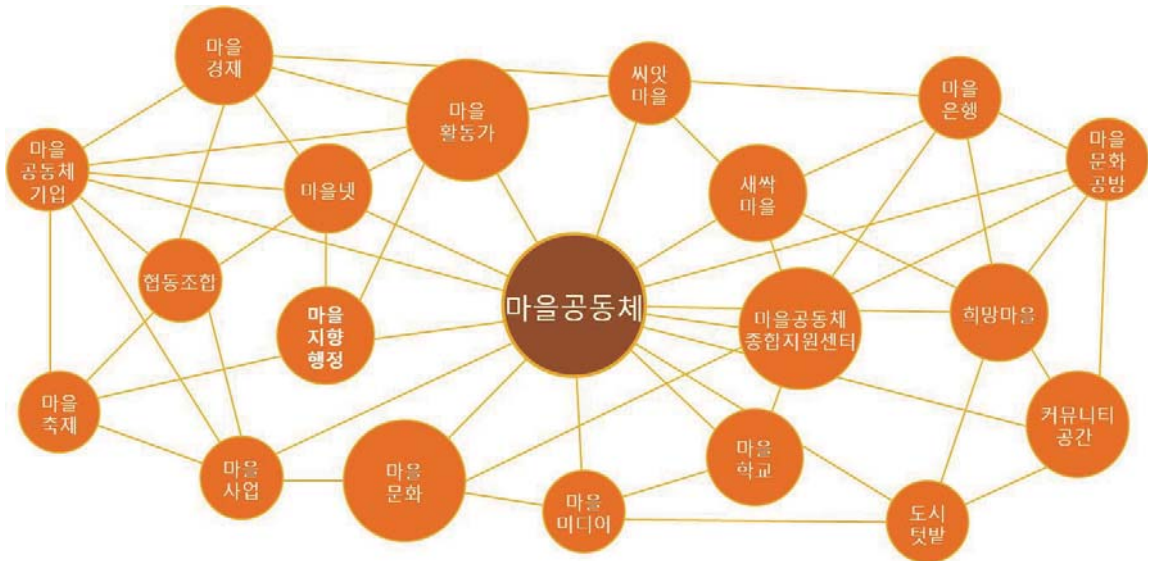
마을공동체는 이미 나와 있는 답이 아니라, 자신만의 답을 찾는 질문이자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곳에서 이웃과 함께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미 마을은 시작입니다.

2. 마을공동체, 뭐부터 알아야 하죠?

앞에 소개를 읽었지만, 아직 마을공동체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당연하죠. 마을공동체는 삶을 사는 공간이고, 어울려 사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한 줄로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다양한 활동이 있고, 마을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부터 이해가 다르거든요. 여기에서는 마을과 마을공동체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념적으로 설명합니다.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서울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마을

과거, 씨족 등의 연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마을이 물리적 공간범위로만 규정이 되었다면 지금 이야기 되는 마을은 다양한 의제 혹은 정서적 단위로 이뤄집니다. 걸어서 10~15분 정도의 거리를 오가면서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서적 개념'의 공간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걸어서 10~15분'이라는 거리도 물리적 거리로만 여기진 마세요. 1시간을 봐도 10시간이 된 것 같고, 10시간을 봐도 1시간이 된 것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 마을공동체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등을 같이하는 집단을 뜻합니다. 마을공동체는 따라서 '마을'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녀요. 이런 말도 있죠. "마을에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그만큼 긴밀한 정서적 결합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마을공동체는 상호연대, 상호부조를 기초로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마을공동체의 핵심 원리죠. 그래서 마을공동체에는 여럿이 부대끼고 함께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주체는 주민입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손을 맞잡습니다. 주민들은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고 마을에 관한 일이라면 주민들이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 마을(공동체)만들기

마을만들기라는 표현은 마을사업을 설명하는 대표적 어휘입니다.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가 국내에 수입되어 그 표현 그대로 번역되면서 '마을만들기'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즈쿠리에 대해서는 "지역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정의가 일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마을만들기는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목적, 내용, 방법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마을 디자인,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마을진흥사업, 생태마을운동, 공동체 운동, 주민 자치운동, 마을의제 운동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만들기'라고 표현했지만, 인위적인 '만들'을 지양합니다. 정확하게는 마을만들기는 인위적인 만들이 아니라 삶의 필요를 함께 궁리하고 협동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만들기'라는 통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 마을살이

마을공동체에서의 삶을 '마을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이웃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죠. 늦게 퇴근하는 날 옆집에 아이도 맡기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먹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나누는, 마을에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이 마을살이예요. 누구나 삶의 필요와 결핍이 있잖아요. 그걸 마을에 사는 다른 누군가와 공감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을살이는 살을 찌웁니다.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에 대해 모든 것을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데요. 마을공동체에 대한 계획수립부터 교육, 지원사업의 접수와 이를 위한 컨설팅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서울시 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에 자리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각 마을마다 다른 상황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Part 2(p.76)에서 확인하세요.

· 마을 발전단계 I : 씨앗마을

마을 발전단계로는 씨앗마을, 새싹마을, 희망마을이 있습니다. 씨앗마을은 마을 발전단계 최초의 모습이죠. 마을 발전단계를 구분한 이유는 성장 정도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씨앗마을은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가진 주민들이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꿈틀댈 때를 가리킵니다. 주민들이 마을(주민)의 필요를 발굴하면서 마을의제를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씨앗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 마을 발전단계 II : 새싹마을

마을 발전단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한 논의와 고민 끝에 마을의제를 결정하고 실현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단계를 뜻합니다. 마을 자원 파악에도 힘쓰는 한편 파악된 자원투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좌충우돌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작더라도 마을의

제 하나를 성공시키는 경험은 꽤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이 또 다른 마을의 필요와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 마을 발전단계 Ⅲ : 희망마을

마을 발전단계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희망'이 반짝 반짝 비치는 단계로, 새싹마을에서 한 단계 높아진 상태죠. 마을조사와 머리를 맞댄 고민 등을 통해 2개 이상의 마을의제를 갖고 활동하는 마을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민들도 그만큼 마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겠고요. 마을살이를 위한 다양한 계획이 발굴되고 주민들의 참여도 또한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에 꼭 필요한 인물이죠. 오지랖도 넓어야 하고 이것저것 참여하는 것도 많아야 해요. **마을 오지라퍼** 혹은 **마을 코디네이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주민들의 필요를 모으고 활동을 독려하는 사람입니다.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길 때, 호명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을활동가예요. 절대 단체 중심의 운동가만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른 말로, 마을 오지라퍼, 이름 좋지 않아요?

· 마을넷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별로 활동하는 주민과 모임이 자치구를 기반으로 모인 자발적 네트워크 단위입니다. 사람과 사람 혹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공동체와 중간지원조

직 활성화를 위한 역할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선 강동마을넷, 강북마을넷, 도봉마을넷, 성동마을넷 등과 같이 각 자치구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금천마실, 합성(함께하는 성북마당) 등 자기만의 이름을 갖고 활동하는 곳도 있답니다.

· 마을지향행정

마을공동체의 핵심은 **주민주도**에 있어요. 주민의 필요와 요구가 '진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이죠. 주민은 행정에 의한 동원의 대상이 아닌 주체입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 행정(관)은 주민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을지향행정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관련, 행정의 방식과 초점을 마을에 둬야 의미합니다. 실제로 마을에선 모든 의제가 통합돼 움직이는데요. 행정 역시 이에 맞춰 개별 아닌 통합행정이 이뤄져야 하고, 재정 투입보다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주민 참여도 공모에 의한 수동적 참여가 아닌 자발적 신청에 기반하지요.

· 마을경제

마을공동체의 '경제'는 특정한 체제나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에서도 여전히 토지를 빌리고, 세금을 내며, 자본가의 관점을 가진 관계자들과 만납니다. 하지만 마을경제는 이윤만을 위한 활동보다는 마을살이를 보조하는 성격을 띠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갖고, 자기고용과 비슷한 종류의 가치를 육성합니다. 마을에서 생산과 소비, 고용 등의 경제시스

템이 소규모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 마을공동체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포함)

주민들이 마을의 필요충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기업으로 마을경제에 기반을 둡니다. 마을의 다양한 문제들을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일'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을경제가 그렇듯, 마을공동체기업도 작동방식에 있어 영리기업과 다소 다릅니다. 최우선 목적은 마을의 필요 충족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상호부조 등 협동조합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갖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마을주민들이 출자하여 협동조합방식으로 조직한 비영리 민간단체도 가능해요. 마을공동체기업은 마을경제의 영역 안에서 존재합니다. 마을의 관계망에 운영을 기댑니다. 요즘 많이 언급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가 주목적이 아닌, 취약계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사회적 목적 추구,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의 요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현재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 인증하는 제도로써 사회적 기업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공공적 사회혁신을 하는 기업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주도(인증)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세워졌

습니다. 마을기업 지정업체는 최장 2년간 총 8,0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과 경영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 협동조합

2012년은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졌고, 2012년 말부터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졌지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풀니다. 조합원의 권익에 복무하고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역시 영리가 최우선의 목적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축적이 아닌 나눔이 주요 작동 방식입니다. 나눔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요소만 뜻하는 것이 아닌 비물질적 요소도 포함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마을사업

이 속담과 맥락이 닿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필요를 느끼고 욕구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마을사업은 시작됩니다. 필요와 욕구가 있고, 결핍이 있는 가운데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따라야 하는 거죠. 절실하면 필요는 필요와 만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재능이 결합하고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보태고 보태집니다. 세 명만 모이면 된다는 **3의 법칙**이 마을사업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의기

투합입니다. 한 사람이 앞장서면 의기투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법이니, 역시 마을활동가의 역량이 발휘돼야죠.

· 마을은행(뱅크)

금융을 '경제의 핏줄'이라고 하잖아요. 마을뱅크도 마을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합니다. 마을경제의 핏줄 역할도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은행과는 다소 달라요. 금융의 공공적 성격을 지니되, 마을뱅크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마을의 공공성에 집중하고요. 마을에 대한 강한 헌신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는 마을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아울러 마을공동체에서 경제력 여부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구실도 합니다. 돈을 무조건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의해 마을뱅크에는 돈이 나가고 들어옵니다.

· 마을문화

문화는 우리를 만들고 우리는 문화를 만들죠. 마을문화 역시 마을주민들에 의해 형성되고, 마을문화는 주민들을 만듭니다. 따라서 마을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재탄생합니다. 분화될 수도 있고요. 마을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가 마을문화를 새로이 배치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죠. 문제는 얼마나 전염성을 갖고 퍼져나갈 수 있느냐, 얼마큼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 마을문화공방(마을예술창작소)

마을은 살면서 노는 곳이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죠. 잘 놀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것, 잘 아시죠? 그렇게 놀기 위해서는 공간과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도시인들이 잘 놀지 못하는 것은 노는 법을 모르고 놀아보질 못해서 그래요. 직접 몸으로 해보질 못했으니 재미와 쾌감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직접 해보면 달라집니다. 마을문화공방은 문화예술과 직접 만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성의 능동적 일깨움을 돕고요. 나의 행위가 곧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장소, 그것이 마을문화공방입니다.

· 마을미디어

마을은 마을 스스로를 기록하고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모든 매체와 수단, 결과물 모두를 마을미디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을미디어는 마을살이의 표현수단이자 마을 기록의 저장소로서, 마을 소식을 알리고 전파하는 확성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을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며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마을미디어는 꼭 필요해요. 마을미디어의 주체도 주민이에요. 마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고립과 소외,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거죠. 영상, 글자, 음향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모든 활동을 통칭하는 것이 마을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을축제

신명나는 놀이 한 판, 마을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죠. 이 마을축제의 기획자 역시 마을주민이어야 합니다. 어떤 축제를 즐기고 싶은지 파악하고,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축제의 시작과 끝은 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어진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즐길 것인지 직접 결정합니다.

· 마을학교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다루는 곳이 마을학교입니다. 각 마을공동체가 가진 상황이나 제반여건 등에 따라 교육 과정도 다양할 수 있겠죠. 교육 커리큘럼 자체도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되고요. 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지향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마을학교에는 성적 경쟁이 없고, 우등생도 열등생도 없어요. 꼴찌라도 괜찮은 학교, 그곳이 마을학교랍니다.



3.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울에는 이미 수많은 주민모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골목에 사는 또래의 주부들이 한집에 모여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외출할 때 아이를 대신 돌봐주며 친하게 지내는 경우는 서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주민모임이 뭐 별건가요? 앞집 옆집 친하게 지내면 주민모임인거죠. 같은 골목에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같은 학교 동문들이 추리닝에 슬리퍼 신고 동네 술집에 모여 소주 한잔 마시는 것도 주민모임이라면 주민모임이구요. 주말마다 동네 학교 운동장에 모여 공을 차며 땀방울을 흘리는 조기축구회도 주민모임이지요. 한 달에 한번 켓돈 들고 만나 외식한번 거하게 하는 것도 주민모임이구요.

이렇게 존재하는 주민모임들이 자신들의 관계망을 확장하여 마을과 무엇인가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이미 **마을공동체**는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래 주부들이 아이들을 돌아가며 돌봐주고 놀아주며 책도 읽어준다면, 어떤 법적 규정이나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미 **공동육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개설한 문화강좌를 통해 같이 기타를 배우며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동네 놀이터에 놀러 나온 아이들을 위해 기타연주를 들려준다면 이것은 이미 **마을 연주회**이고요. 등산회에서 마을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반상회에서 마을 화단을 가꿀 수도 있지요. 조기축구회에서 놀이터

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파트 주민회에서 옥상텃밭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서울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주민모임들이 전부 마을공동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랍니다. 주민모임이 마을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을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어떤 활동을 시작할지 막막하다고요?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첫발만 내딛는다면 시작할 수 있답니다. 주민모임에서 마을을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같이 돌아다니며 도란도란 얘기해보는 거지요. "여기는 턱이 높아서 옆집 새댁 유모차 끌고 다니기 힘들겠다.",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교통사고 위험이 높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낮에만 돌아다녀 보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같이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낮과는 다르게 또 다른 것이 보이겠지요. "여기는 너무 어둡다.", "이 길은 사람이 안다녀서 밤길이 좀 위험하겠네." 뭐 이런 것들.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편한 것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마을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마을조사를 통해 필요한 것을 시작할 수도 있답니다.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조사해 보는 것이죠. "우리 마을은 커피 마실 곳이 별로 없구나.", "어린이집이 부족하네." 뭐 이런 거. 마을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활동부터 시작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도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온다고요? 그럴 땐 스리슬쩍 커닝을 해보세요. 벤치마킹이 따로 있나요?! 다른 마을은 뭘 어떻게 시작했는지 보고 따라서 해보는 거죠. 마을이란 게 원래 상부상조, 서로 돕는 것이잖아요.

마을문화 활동

영화제, 마을축제, 마을극장, 갤러리, 문화예술창작소, 마을도서관 등
마을신문, 마을미디어 등

경제 활동

벼룩시장, 마을장터, 공동구매 등
마을금고, 주택조합, 생협, 의료생협 등
봉제공장, 수제화공장, 나무공방, 비누공방, 양초공방,
반찬가게, 되살림가게, 꽃집, 떡집, 음식점 등

아동 돌봄 및 교육활동

공부방, 공동육아, 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대안학교,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등

주거환경 개선활동

한옥보전, 집수리, 담장꾸미기, 한뼘공원 가꾸기, 놀이터 가꾸기, 평상만들기 등
상자텃밭, 옥상텃밭, 자투리 텃밭, 길조성, 나무심기, 화단가꾸기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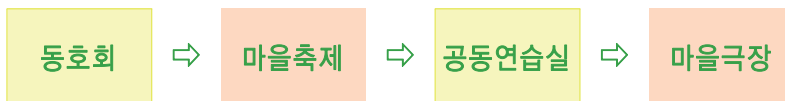
인문학강좌, 마을학교, 기타교실 등
연극동아리, 문학동아리, 마을밴드, 산악회 등
커뮤니티 공간, 복합문화카페 등

1) 마을공동체 유형별 형성과정

그럼 마을공동체로 가는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따라 가볼까요?

저를 따라 오세요~! 가다보면 마을이 보입니다.

· 동호회, 놀면서 마을을 만들다



고등학교에서 락밴드를 했던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틈틈이 기타치며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학창시절의 라이벌 락밴드도 그들끼리 기타치며 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락커의 피가 끓어오르는 걸 참지 못하고 누가 진정한 락커인지 연주 대결을 펼쳐보자고 약속해 버렸습니다. 이미 옆길러진 물, 회사 퇴근하고 매일 모여 땀연습을 했네요. 그렇게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연습에 연습을 더해서 드디어 결전의 날. 동네 놀이터에 모여 하루 종일 연주 배틀을 벌이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재미지게 논 이후 시원한 생맥주로 목을 축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또 다시 승부근성이 발동하게 됐네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고, 산 중에 호랑이가 두 마리일 수 없는 법. 동네의 진정한 락 고수를 가려보자고 객기를 부려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알고 있는 동네 락밴드는 전부 연락을 취해보고, 그

러다가 연주만 하면 힘드니까 춤 동호회 친구들도 불러보고... 알음알음 동호회들이 모여 걸판지게 놀이판을 벌여볼 작당을 하게 됩니다.

장소를 섭외하고 함께 놀 동호회들과 의기투합도 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연습도 죽어라 하면서 준비를 해서 드디어 결전의 날. 공원에 모여 웃고 떠들며, 춤추며 노래하며, 기진맥진 할 때까지 놀아버렸죠. 한판 축제가 끝난 후 같이 땀 흘린 사람들끼리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꽃도 피웠고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다가 술김에 또 다시 객기를 부리게 된 거죠. 같이 공동 연습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조그마한 우리들의 소극장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은 거죠. 그 곳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습도 하고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함께할 소극장을 만드니 모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도 했어요. 공동으로 운영할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면서 점차 이웃 주민들의 마을사랑방이 되었다지요.

· 우리 마을이 내 아이를 키운다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내 아이 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욕심. 이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하지요. 내 아이만큼은 가급적 좋은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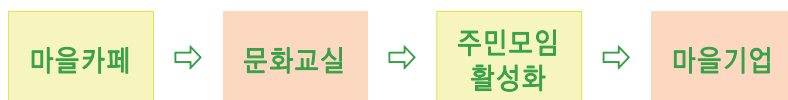
먹이며 키우고 싶은 것도 부모 마음이구요. 학원이다 뭐다 하면서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내 아이만의 특성을 살려주고 싶고, 어릴 때는 아이랑 한 마디라도 더 나누며 교감하고 싶은 것. 이것도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유식은 어떤 것이 좋은지, 아이에게 좋은 장남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가 좋아하면서도 유익한 동화는 또 무엇인지... 이런 정보를 찾아보면 좋은 정보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이심전심으로 모이게 되지요. 같이 수다를 떨다가 정보도 나누고 유아용품도 나누다보면 부모들끼리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는 거지요.

매일같이 유모차 끌고 만나서 같이 밥도 해먹고 논다면 뭐 별 것 있나요? 이것이 공동육아인 것이죠. 공동육아는 뭔가 좀 색다른 것 아니냐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랍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모여서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첫발을 내딛고 보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은 없을까 찾게 되고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법적 요건도 갖추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냥 공동육아로 끝낼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보다 특색 있는 교육을 계속 제공하고 싶다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안학교 설립인데요. 공동육아를 하면서 부모들끼리 만들어온 교

육칠학을 실현할 학교를 직접 설립합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다보니 부모들도 자주 얼굴을 보게 되고, 그럼 서로 관심사가 맞는 부모끼리 모여서 책도 읽고, 밴드도 만들면서 주민모임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날 좋은 날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거죠! 이를 두고 마을이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마을을 키운다고 한답니다.

· 커뮤니티 카페, 우리동네 사랑방



서울 어디를 가도 카페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 특별하게 운영되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되는 마을카페가 그것인데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구요. 때로는 개인사업자가 사랑방으로 활용하기 위해 카페를 오픈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옛날 시골마을 사랑방처럼 사람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꽃 피우며 정을 나눌 수 있으면 되니까요.

마을카페는 그냥 카페처럼 차를 팔지요. 하지만 다른 카페와는 다르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답니다. 정기적으로 요리 강좌를 할 수도 있어요. 요리 강좌가 있는 날은 강좌에서 만든 음식으로 같이 식사도 하구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

키 강좌를 열기도 한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만든 쿠키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기도 하지만 강좌를 듣는 마을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카페에 전시해놓고 판매할 수도 있어요.

카페에서 쿠키만 팔란 법 있나요? 카페 한 쪽에서는 마을사람들이랑 되살림 가게를 운영하기도 한답니다. 되살림 가게가 뭐냐고요? 재활용가게쯤 되겠네요. 마을주민들이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의미에서 기증을 하면, 이를 카페 한쪽에 전시해놓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죠. 커뮤니티 카페는 그 자체로 다양한 마을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이랍니다. 그 많은 활동을 통해 마을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마음과 정보를 나눕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마을은 쑥쑥 커가는 거지요.

· 상자텃밭에서 피어나는 녹색기업, 녹색마을

상자텃밭 ⇨ 밥상모임 ⇨ 옥상텃밭 ⇨ 마을장터 ⇨ 마을기업

화분을 키우는 집은 많잖아요. 난을 키우기도 하고, 선인장도 있고, 다양한 허브도 키우고요. 화분을 키우면 집안이 화사해지고 보기에 좋지요. 그런데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입에도 좋은 것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시대에 스스로 키운 것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베란다 햇볕 잘 드는 곳에 화분을 놓아두고 입맛대로 골라 다양한 작물을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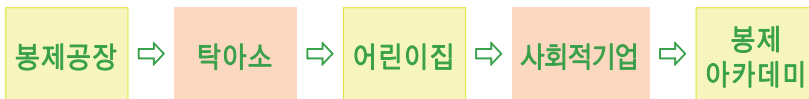
고 매일 매일 물을 주면서 정성을 들이다보면 어느 틈엔가 꽃이 피고, 꽃이 피었다 싶으면 열매를 맺어요. 물론 마냥 쑥쑥 자라는 것은 아니죠. 가끔 가다 잎이 누렇게 뜨기도 하고, 말라비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본 사람에게 자문도 구해본답니다. 그러면 탄저병이다, 흰가루병이다 전문용어가 나오면서 설명해주지요. 그리고 친환경 용법 처방을 받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이웃에 조언을 구하며 어리바리 농사를 지어가는 거지요.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다 베테랑 도시농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동네에 사는 도시농부들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열심히 작물을 키우지요. 정성들여 키운 작물이 소출을 내기 시작하면 자신이 키운 작물을 가지고 와서 삼겹살 파티도 하면서 누가 잘 키웠나 자랑질도 하고요. 즐거운 한 때를 보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 의기투합하여 아파트 옥상에 공동 텃밭을 운영하기도 한다네요. 아파트 옥상만 있나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만 잘되면 주민자치센터 옥상도 공동 텃밭이 될 수 있잖아요. 도시농업, 시골의 정취에 함께 수확해 함께 나눠 먹는 재미까지 얻어갑니다.

농사욕심이 나기 시작하면 경작지가 조금씩 늘어나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상자텃밭 개수를 늘리다가 더 이상 상자텃밭을 놓을 장소가 없으면 공공장소 옥상에 눈길이 가게 되고요. 동네의 조그마한 공터라도 있을라치면 어떻게 고추 하나라도 심을 수 없을까 눈독을

들이게 된답니다. 동네에 도시농부 숫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상자텃밭이랑 옥상텃밭, 그리고 공터텃밭이 늘어나면 삼겹살 파티가 아니라 마을장터를 열기도 하지요. 마을장터에서 서로의 작물을 사고팔다보면 새로운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작물을 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배한 작물로 밥집을 내보면 어떨까? 콩을 주로 키워서 두부공장을 만드는 것은 어때? 뭐 이런 생각들. 이렇게 상자텃밭이 친환경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고 도시의 마을은 어느덧 녹색마을로 변해간답니다.

· 봉제공장과 아이들의 놀이터



봉제공장이 모여 있는 동네. 먼지가 폴폴 날리는 영세사업장이 줄지어 있습니다. 아기 분유 값, 기저귀 값이라도 벌기위해, 나오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해도 이렇게 저렇게 일은 하고 있는데 민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고민이었지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애를 방치할 수도 없고...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엄마들끼리 밥 먹으며 수다 떨면 아이들 얘기로 시간가는 줄을 모른답니다. 그러다 애 봐줄 사람이 없는 고민도 나누며 함께 한숨도 쉬고요. 그러다 같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탁아소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한 거죠. 탁아소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탁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요. 쪼들린

살림에 돈을 모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요. 허파에 바람 들었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어디서 복권 당첨 안 되나 허망한 꿈을 토로하며 헛웃음도 웃었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아이들의 톨망톨망한 눈망울.

처음에 첫발을 내딛기가 힘들었지 한번 시작하니 좋더라고요. 봉제공장 옆에 탁아소가 있으니 일하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보러 갈 수 있어 안심도 되고요. 탁아소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났대요. 결국 탁아소 하나만으로는 안 되서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탁아소를 함께 만든 경험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자신감을 줬어요. 뭐든지 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언제까지 남의 브랜드로 혈값에 납품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소규모 봉제공장들이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세웠답니다. 기왕 일하는 것. 내 브랜드로 제값 받고 팔아보자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일하다 보니 봉제 기술에 대한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이 생겼으니 또 해야죠. 봉제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서 봉제 기술도 계속 개발해 간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서로서로 도와가며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 마을, 경제적 소외를 넘어서다



혹시라도 공동육아나 동호회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도시에
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거라고 도리질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까
요?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마을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IMF 이후 무한경쟁을 통한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되었
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신용불량자로, 노숙인으로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 분들. 이 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하기 위해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함께 나누고,
함께 집을 나눠지는 이웃이니깐요.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지하철역
에서 박스를 깔고 자며, 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으로 하
루하루 연명하던 이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내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요.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야지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얼마
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처음에는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았지요. 노숙인을 위한 쪽방에 들
어갔거든요. 코딱지만한 공간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어딘가에 정착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이 정착생활을 지속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월 10만원은 벌어야 했고요. 스스로 벌어서
자신의 공간을 지켜나가면서 다시 꿈꾸기 시작한 거죠. 쪽방에 모

여든 노숙인들끼리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야 노숙인들이 무슨 기금이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절실했답니다. 별이가 없는 노숙인 신세지만 새로 생긴 꿈을 지키기 위해 천 원씩, 이천 원씩 모으기 시작한 거죠. 소액이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모으다보니 어느새 기금이 되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노숙인들을 위한, 노숙인들에 의한, 노숙인의 기금이 조성된 거죠.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50만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 대출을 시작했답니다. 50만원이 목돈이라 싶지만 노숙인들에게 5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랍니다. 보증없이 어떻게 노숙인들에게 대출해줄 수 있냐고요? 믿고 대출해줄 수 있으니 이웃이지요. 그러니 마을이지요. 천 원, 이천 원씩 꾸준히 함께 만들어온 마을!

마을을 형성하니 새로운 꿈을 함께 꾸게 된답니다.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먹는 문제도 해결해야겠죠? 노숙인들이 함께 밥집을 열었답니다. 밥집에서 아주 저렴하게 밥을 팔구요. 팔고 남은 밥은 식사를 못한 분들에게 나눠주지요. 그럼 누가 밥을 사먹냐고요? 우리는 마을이라니까요. 비록 가진 것 없는 그들이지만 없는 것도 서로 나누며 그렇게 새로운 미래는 만들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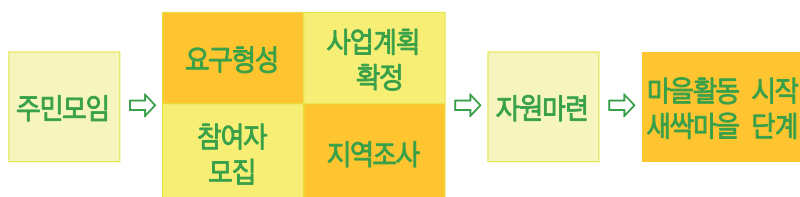
2) 마을공동체는 이렇게 커가요

씨앗마을은 주민모임이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공동의 요구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를 해가는 마을입니다. 씨앗마을이

싹이 틔워 새싹마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발전 경로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씨앗마을의 발전경로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모델로, 이후의 모든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과정입니다. 마을을 형성하고자 하는 주민모임이 있을 때 씨앗마을은 시작되는데요. 씨앗마을이 새싹마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요구**를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활동을 해보자. 뭐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동의 요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경로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골목에 사는 또래 주부들이 **공동육아**라는 공동의 요구를 먼저 형성할 수도 있지요. 이럴 때는 공동육아에 도움이 될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함께 할 참여자도 모집하면 되겠죠. 그리고 공동육아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동출자나 재능나눔 등을 통해 공동육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고, 공동육아를 진행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창모임에서 마을을 형성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공동의 요구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조사를 먼저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자원조사 과정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반찬가게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죠. **반찬가게**라는 공동의 요구를 형성하면 반찬가게를 함께 하거나 안정적 소비자가 될 참여자를 모집한 후 이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반찬가게의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소위 말하는 시장조사와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자원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아니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반찬가게를 창업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벌일 수도 있어요.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마을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의 요구 즉,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을활동을 찾아 형성해가는 겁니다. **마을축제**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마을축제를 진행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모금과 재능나눔 등을 활용하여 축제를 진행할 자원을 마련한 후 주민이 모두 모여 마을축제를 즐겼다면 이미 마을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의 요구 발굴단계〉

공동의 요구에 의해 마을활동을 시작하여 새싹마을로 성장한 마을은 지속적인 마을활동 속에서 보다 새로운 욕구로 연결됩니다. **공동육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늘어나면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위해 또 다른 공동육아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도시농업**을 진행하는 마을에서 공동체 주민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채소를 이용해 **반찬가게**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지요. 혹은 **마을신문**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이와는 무관하게 **나무공방**을 만들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마을사업이 시작

되면서 새싹마을은 활동을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 희망마을로 발전하게 됩니다.

새싹마을이 희망마을로 성장하는 데는 활동이 확장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 이상의 새싹마을이 새로운 요구를 중심으로 통합되기도 한답니다. 공동육아를 진행하는 두 개의 새싹마을이 서로 네트워킹하다가 아이들이 자라 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공동의 요구에 의해 **대안학교**를 함께 만들면서 하나의 마을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새싹마을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희망마을로 성장할 수도 있답니다.

4. 서울에도 마을이 있나요?

· 삼각산재미난마을

우이동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삼각산재미난마을**은 고도제한에 묶여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 마을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자신들의 교육철학에 근거한 '삼각산재미난학교'를 설립합니다. '삼각산재미난마을'이란 마을 이름은 바로 이 학교 이름에서 시작됐고요. 아이들을 통해서 친해진 부모들이 의기투합하여 '재미난카페'를 열었어요. 이 카페에서 인문학강좌도 하고, 타로

강좌, 와인강좌 등을 하면서 주민들과 재미나게 지냅니다. 또 마을밴드 등 다양한 주민모임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아이도, 어른도 재미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2012/05/17



· 아름다운 마을

신학교의 학생들이 성경공부를 하면서 성경적 삶을 살기위해 함께 인수동에 정착했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마을의 시작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마을학교'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웁니다. 이 학교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시작됐는데요. 대안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초등과정은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고학년 과정은 홍천에서 진행하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도시에서 마을공동체는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도농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적 삶이 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농골마을

재개발 아파트단지 지역의 세입자분들이 협동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고 경제협동공동체, 생산협동공동체, 생활협동공동체, 복지협동공동체의 꿈을 꾸는데요.

30여명이 출자하여 **농골신협**을 세우면서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됩니다. 신협 밑의 공간에 작은 매장을 만들어 생협도 시작했구요. 마을 사랑방 11개소를 만든다는 포부를 가지고 '하늘나무'란 사랑방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 청구 3차아파트

아파트 내에 아이들 독서실을 만들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관리사무소 3층을 독서실로 개조했어요. 2층에는 도서관을 만들었고요. 구청의 지원을 받아 관리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시작된 상자텃밭 가꾸기는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으로 이어졌고요. 이는 마을기업인 **(주)청구EM환경**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아파트 옥상에 태양열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 한다네요.



· 산새마을

도시개발에 소외된 지역으로 15년간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주민들 간의 교류가 없었던 지역이었으나 은평구에서 (주)두꺼비하우징 시범단지로 선정한 이후 민관협력형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개발이 소외된 지역에서 무작정 개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 것이죠. 서울시가 도시농업경작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매입했던 공원부지에 쌓여 있는 25톤 가량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주민들과 두꺼비하우징이 재정 부담을 하여 꽃밭을 조성했고요. 마을텃밭을 조성하여 지역 어른들이 상추, 배추 등을 재배한 후 수확한 채소는 주민들과 나눠먹거나 복지센터 혹은 경로당 등에 기부한답니다.



· 성대골마을

책을 읽자고 모인 주부 5명에서 지렁이를 이웃에 분양하고, 버려진 땅에 국화를 심으며 작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지역의 풀뿌리단체인 희망동네의 마을도서관 운동에 참여하여 아이들을 이끌고 모금운동을 벌여 2010년 **성대골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도서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촉발되기 시작했어요. 어린이 특기적성교육이나 부모교육, 학교세우기운동, 인조잔디 반대운동 등을 벌이더니, 2012년 4월에는 방과후학교인 '마을학교'까지 오픈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절약을 위한 '성대골절전소'도 설치해서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대골절전소는 가정별로 절약한 에너지를 합산해 눈으로 확인하는 운동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에너지자립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Part II

함께 해봐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1. 서울은 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까요? _배경 및 목적
2.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_사업 내용
3.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_사업 참여방법
4. 한 번에 쉽게 도움받는 방법은 없나요? _지원센터 사용설명서

1. 서울은 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까요?

· 이웃을 잃은 시대

우리는 승자독식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겠지만 그 이면에는 패배의 쓴잔에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실업률은 높아만 가고, 청년실업은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적대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고 자살률 또한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요. 이런 시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왕따와 학교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란 도시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이면서도 동시에 현대 사회의 문제가 집약된 도시이기도 하지요. 서울에서 사람을 위한 장소는 찾기 힘듭니다. 서울에 사람을 위한 장소가 없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요원해져갔지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도시에서 동물이라고 살기 편하겠어요? 나무인들 살기 쉽겠어요? 물이라고 제대로 흐르겠습니까?

극단적 상업화는 끝없는 욕망을 재생산하며 소비사회를 부추기고 육아·교육·노인돌봄조차 상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비로 해소하는 것이죠. 내 아이, 내 가족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주의는 부메랑이 되어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잦은 이사로 이웃은 사라져가고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은 베드타운이 되어버렸지

요.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빠른 사회변동을 경험했고, 그 사이 사람간의 관계,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유지되기 어려웠는지는 높은 이사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루에도 6,500명 내외가 이사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동의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기는 이사율은 17.5%로 5%대의 도쿄 등과 비교해보면 세계적으로도 단연 높은 수준입니다. 숫자로만 놓고 보면 5~6년이면 주변의 이웃이 모두 달라지는 셈이죠.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10대 주요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2007년 조사),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조차 서울을 고향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12%(2010년 조사)에 이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 마을에서 답을 찾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서울시민의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영위를 위해 마을공동체에서 답을 찾았어요.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자살, 범죄, 청소년 문제, 빈곤,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인사하는 소소한 즐거움, 그 즐거움 속에 저절로 사회적 안전망이 가동하고, 지역경제와 지역문화는 살아납니다. 이는 앞서 마을살이를 하고 있는 서울지역 곳곳의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을 통해 입증되었어요.

10년 동안 무범죄 마을이라고 기사가 났던 '성미산 마을', 공동육아로 모였다가 같이 사는 재미에 쏙 빠진 '삼각산재미난마을' 등 서울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2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85개 마을은 주민주도로 공동육아와 같은 마을교육, 주민모임 등의 다양한 마을문화 활동, 마을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마을경제가 자생적으로 싹을 틔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울시는 이러한 마을공동체 활동들과 마을살이를 지원함으로써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고자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점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을공동체 사업인거지요.

· 마을은 이미 그곳에...

콘크리트가 지배하는 도시 서울이지만, 그래서 암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서울에도 마을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맡으며 살아가는 바로 그 마을 말이에요. 사실 마을은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국가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동원체계가 결합한 **새마을 운동**은 **관주도의 한국형 마을만들기 운동**의 출발이라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주민들이 동원되어 집을 보수하고, 도로를 정비하며, 외관을 질서정연하게 고치는 일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이런 흐름과는 다른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나서 달동네에 정착한 사람들을 위해

야학을 열고 탁아소를 운영하고, 때로는 철거에 저항하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거죠.

이런 흐름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 여기서부터 **민간주도의 한국형 마을만들기 운동**은 출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활동들은 주민조직이 되어 풀뿌리 시민단체로 성장해가죠. 야학의 경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부방을 걸쳐 지역아동센터로 변화해가며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함께 경제 성장의 결과로 형성되고 두터워진 중상층이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부부중심의 핵가족 시대에 맞게 주민들은 주부교실이나 문화센터,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경제적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보다 좋은 소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스스로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소비하는 생협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며 자녀를 키우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구성이 변하자, 핵가족 시대의 육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혹은 자녀 양육도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픈 욕구에 의해 공동육아를 진행합니다.

마을만들기 운동은 2000년대 들어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IMF를 거치면서 승자 독식의 무한경쟁 사회가 도래하였고, 이와 함께 다양한 영역으로 복지가 확대되었죠. 한편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활동도 빈번하게 일어났지요. 집주인과 세입자,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 사이의 갈등도 증폭됐고요. 경제 불안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도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었어요.

무한경쟁은 개개인을 고립시키지만 개인의 고립은 역으로 경쟁이 아닌 나눔의 욕구를 만들며, 갈등과 불안은 다양한 주체들의 소통과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공동체를 요구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자신들의 요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답니다.

· 서울, 마을의 시대를 열다.

2012년 서울시는 드디어 마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치유의 정책을 시작한 것이지요.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당선 직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2012년 1월 이를 추진할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서울 혁신기획관에 신설했습니다. 사업 첫해인 2012년 토대구축에 주력한 마을공동체담당관은 민간전문가와 마을활동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업의 방향과 체계를 정립하며, 내용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민관 공동으로 준비해 지난 2012년 3월에 공포하고, 서울연구원에서 주축이 되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5년 중장기 방향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도 수립해 같은 해 9월 발표했습니다.

다.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목표로 3대 과제 10대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 비전 및 목표

사람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의 3대 과제는 관계성을 회복하고 마을일꾼을 육성하는 '**마을사람 키우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회복하기 위한 '**마을살이 함께 하기**', 마을지향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 등이며, 이를 위한 10대 세부전략을 도출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도 '3대 과제 10대 전략'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2012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업의 건강한 지속을 위해 시민의 요구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조례를 만들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와 지원센터 등의 토대를 구축했어요. 2차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잉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전체 절차를 시민 친화적으로 다시 구축하고, 지금까지 발굴된

다양한 마을공동체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유기적인 사업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3대 과제와 10대 전략



마을사람 키우기
관계성 회복과 마을사람 육성

- 창의적 마을일꾼 양성
- 청년의 활력과 역량 활용
- 여성의 활동과 역량 강화



마을살이 함께 하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회복

- 함께 사는 재미가 있는 공동체 문화 육성
- 이웃 돌봄 활성화
- 마을 경제 활성화
- 에너지 절감·생태마을 조성



새로운 민관협력 만들기
마을지향 민관협력 거버넌스

- 주민주도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 현장밀착형 마을인프라 구축
- 마을지향 행정시스템 정착

2.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 개 요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무분별한 도시화의 확대, 경쟁심화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하락, 공동체의 붕괴, 가속화되는 인간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일과 공동

의 관심을 찾아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돕는 일체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서울시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주민모임·마을카페 등), 함께 기르고 돌보며(마을복지·공동육아), 건강한 공존을 고민하고(에너지자립·마을생협), 함께 일자리를 마련하여(마을기업), 함께 즐기는(마을축제·마을문화) 모든 활동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 관 주도의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 제안,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이에 주민이 쉽게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주민제안방식으로 구성했으며, **공동의 문제인식**과 **자발적 추진의사**만 있다면 어느 단위의 마을이라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을공동체 사업 구성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의 형성단계와 활동분야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을공동체의 형성단계에 맞춰 **마을공동체 교육 → 주민모임 형성 지원 → 마을별 계획 수립 지원 → 분야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과정별 컨설팅** 등 흐름에 맞춰 사업들이 구성되어 추진되고 있고요. 마을별로 의제를 설정한 후에는 크게 돌봄, 경제, 문화 부문으로 나뉘 공동체의 삶에 대해 촘촘히 지원합니다. 특히 주거형태에 따라서 아파트, 단독, 상가지구, 한옥마을 등에 대한 맞춤지원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는 돌봄부문에서 어린아이를 둔 가족들이 겪는 공통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모이는 **부모커뮤니티** 등 11개 사업이 추진됐고요. 경제부문에서는 마을의 문제를 마을의 자원을 통해 해결하는 **마을공동체기업** 등 5개 사업, 문화부문에서는 **마을축제** 및 **마을미디어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추진됐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마을공동체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과 **마을상담원 운영**, 주민의 마을의제 수립부터를 지원하는 **우리마을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2013년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지난해 추진된 지원사업들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범위에서 구성, 추진되는데요. 돌봄, 경제, 문화, 주거 등 4개 공동체 부문으로 14개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 함께하는 사람들

우선, 시민의 입장과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지난 9월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옛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개소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활동을 해온 활동가들이 모인 사단법인 마을에서 수탁·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모든 활동에서 시민의 필요와 요구를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센터는 각 마을공동체마다 다른 상황과 여건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하며, 민관의 가교 역할과 교

육,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활동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역활동가와 외부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계획수립부터 연도별 사업구상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별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칸막이 행정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관계를 구축가동하기도 합니다.

· 사업 신청 방법

그럼, 마을공동체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해마다 연초에 마을공동체 분야별 지원사업의 일정이 발표됩니다. 그럼 원하는 사업의 일정에 맞춰 준비하신 후에 사업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을공동체 분야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나 문턱을 낮춰 **주민 3명 이상이면 누구나**, 또 연중 **언제나** 단일화 창구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야별로 신청절차와 신청양식도 통일시켰는데요. **「사업제안서」(사업제안자 소개서, 사업계획 포함)**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및 진행과정은 바로 이어서 다음 장에서 설명합니다.

3.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방법

앞집에 사는 웅이 엄마랑 옆집에 사는 랑이 엄마가 아이들 들쳐 업고 놀러 와서 같이 열무국수를 말아 먹다가 아이들을 골목에서 함께 키우면 좋겠다고 의기투합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왕 하는 것,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하나만 기억하세요. 서울시는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모든 문의와 신청, 접수, 상담 등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중간지원조직에 일원화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크게 1) 분야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2) 우리마을 프로젝트 지원사업, 3) 마을강사 양성 및 발굴·파견사업, 4) 마을상담원 운영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전반에 걸쳐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76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용설명서'에 담겨 있습니다.)

 **One step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신청하세요.**

먼저, 홈페이지(www.seoulmaeul.org)를 꼭 훑어보세요. 여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방법이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 홈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결정하셨나요? 결정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지원신청을 해봅시다. 신청할 사업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수시접수가 특징입니다.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만 접수를 받는 기존의 공모사업과는 다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준비가 미흡해도 시간에 쫓겨 속성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애로사항을 개선해서 충분히 준비한 후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준비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서류를 다 작성하셨다면 '접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접수창이 뜰 텐데요. 접수창에 신청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으신 후 작성한 신청서를 첨부하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접수 끝! 이랬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는다고요. 센터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 추가 작성을 요청하는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접수한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접수확인을 클릭해보세요. 접수하실 때 입력하신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입하시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접수대기'가 뜨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류 검토를 통해서 접수한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별도의 전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완할 내용이 없다면, 서류가 완벽하다면, '접수대기'가 '접수완료'로 전환될 거예요. 접수가 완료됐는지 매일 확인하기 귀찮다고요? 접수완료가 되면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님께서 제출하신

****사업 지원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란 문자가 발송됩니다.

☞ Two step : 접수 이후에는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우선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요. 현장조사는 보다 공정한 심사를 하기위해 진행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또 연락이 가겠지요? 접수완료 문자가 발송된 후 2주 이내에 센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한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님께서 접수하신 ****사업과 관련하여 X월 X째주에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담당자는 □□□입니다. 현장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3일 내로 개별연락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후 전화가 올 텐데요. 바로 그 때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현장조사는 신청한 사업에 따라 조사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조사에서는 이 일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인 것인지, 마을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현장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심사를 진행한답니다. 심사를 통해서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지원하지 않는지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은 아니니까요. 심사가 끝나면 심사결과뿐만이 아니라 왜 떨어졌는지도 알려주거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수시접수**와 함께 **반복접수**도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이나 아니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원받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고 이를 시정해서 다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의지만 있다면 결국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Three step : 지원이 결정되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지원결정이 되면 끝, 만사 오케이일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정이 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일반교육과 '실행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회계 및 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알아야할 필수 요소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선정되었다고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을 받으셔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꼭!

마을공동체 Q&A

1.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않은 조기축구회 같은 모임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기에 단체뿐만이 아니라 주민 3명만 모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사업과 다른 특징입니다.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단체'나 '기관'뿐만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기축구회'나 '배드민턴회'와 같은 주민모임도 신청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회나 직능단체 등도 신청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이런 모임들과는 달리 이름이 없거나 특별한 활동 역력이 없는 말 그대로의 주민 3명이 연대 서명하여 신청하실 수 있어요.

2.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하는 3명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이어야만 하나요? 같은 지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학교나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3명만 모이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한 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3.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원하면 중복지원이 되나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체나 모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한 사업이 정부나 시, 혹은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면 중복사업이기에 신청할 수 없지만,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다른 지원이 없다면 신청 단체나 모임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해오던 사업도 그 성격이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진행해오던 사업이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하여 다른 지원이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체사업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이랑 단체 사업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고요? 신청한 단체나 모임에서 해당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 사업은 단체나 모임의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은 새롭게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영진을 꾸리고 함께 운영을 결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의사결정기구 결성방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요것이 바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마을공동체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자 소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등 3개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사업제안서」에 「제안자 소개」,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꼭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제안서는 **활동지도 사업용**과 **공간지원 사업용**으로 나뉘지만 **사업목적** 항목만 세분화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활동지원 사업용**을 기본으로 설명드립니다. 이에 각 서류별로 신청방법을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위 세가지 신청서류의 샘플은 Part 3. 부록자료편 '1.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에서 참조하세요. (p.93) 그럼에도 궁금하다면?! 그럼 바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85-2642)로 문의해서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붙임1 : 활동지원사업용】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공고사업명				
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제안자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동	세부지역
	사업대상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내역	총계	신청사업비(원)	자부담
		_____천원 (%)	_____천원 (%)	_____천원 (%)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2013 년 월 일

제안자 : _____ (인)

※ 온라인 접수 시 서명날인 생략 가능(추후 보완)

· 공고사업명

공고사업명은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공고한 '사업명'을 의미합니다. 2013년 2월4일 현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15개 정도의 사업을 공고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발전할수록 늘어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각 부서에서 공고한 사업명을 기입해 주셔야 신청한 사업이 분류되어 심사를 거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 공동육아 활성화
- 청소년휴카페(마을청소년문화공간) 조성
- 마을기업 활성화
-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 청년마을활동 활성화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 마을북카페 조성(마을도서관 활성화)
- 마을미디어 활성화
- 한옥마을공동체 활성화
-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 안전마을 활성화
-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 구 분

구분은 '제안자'에 대한 구분입니다. 제안자는 '주민모임'이거나 '단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안자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라면, 단체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단체에 체크하셨으면 단체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안자가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면 주민모임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단체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사업제안자 소개」를 작성하실 때 '주민모임 연대서명'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안자

제안자가 주민모임이면 대표자의 이름을 기입해주시고, 주민모임의 이름이 있으면 대표자 이름 옆에 주민모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주민모임의 이름이 없으면 당연히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기회에 주민모임 이름 하나 만들어도 좋겠네요. 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 이름을 기입할 필요 없이 그냥 단체명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 제안사업명

제안사업명은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게 20자 이내로 정하면 됩니다. 사업명이 멋있으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멋들어진 사업명을 작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너무 멋을 부리다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업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업명을 듣고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헛갈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헛갈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심사위원도 헛갈리겠죠? 그러니 멋있으나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업명을 정하셔야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정 어려우시면 멋을 포기하고 내용을 선택하세요.

· 사업지역과 사업대상

'사업지역'과 '사업대상'에는 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지역과 사업의 대상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역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신청한 사업을 진행할 지역입니다. 동작구에 살더라도 사업을 관악구 보라매동에서 진행할 것이라면 동작구가 아니라 관악구 보라매동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의 행정동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행되는 행

정동을 전부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사업대상'은 사업에 참여할 주민층을 의미합니다. 넓게는 '주민'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 '학부모', '청소년'처럼 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는데요. 기획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휴카페를 신청하셨다면 '관악구 보라매동 당곡중학교 및 당곡고등학교 학생'처럼 쓰시면 되요.

·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이어서 작성하게 될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중 '4.사업목적과 세부 목표'(p.96)를 작성한 후 그 내용에 근거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이어서 작성하게 될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중 '5.세부 사업계획'(p.97)을 작성한 후 작성하면 쉽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은 종합적으로 진행될 텐데요. 사업은 종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계획은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 사업비

사업비 작성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8.예산계획'(p.99)을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총사업비를 계산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작성하시다보면 신청한 주민들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하고 행정은 보완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니 자부담이 중요하답니다. 자부담은 신청하신 분들의 참여의지와 주민참여의 판단기준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자부담 액수를 기입하신 후 '자부담/총사업비×100'으로 자

부담 비율을 계산하셔서 자부담 액수 옆에 같이 기입하시면 됩니다. 총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자부담인 100만원일 경우 자부담에 '100만원(10%)'처럼 기입하시면 되는 것이죠. 총사업비와 자부담이 결정되면 신청사업비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총사업비에서 자부담을 뺀 액수가 신청사업비 '총계'가 되는 것이니까요.

3) 「사업제안자 소개」 작성방법

사업 제안자 소개

* 제안자가 주민모임 인 경우, 작성 가능한 부분만 작성해 주세요

제안자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월일				
설립목적				
제안자 현황	주민모임		단체현황	
	• 운영진수 : 명 • 회원수 : 명		• 상근활동가수 : 명 • 임원수 : 명 • 회원수 : 명	
주민모임 연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대표제안자(3인)는 ①~③번 기재 *별지첨부 가능 *단체제안자는 해당없음	①			
	②			
	③			
주요 활동분야	• • •			
전년도 활동내용				
예산현황	• 예산총액 : • 자원구성 : 회비(%), 사업수익(%), 기부금 등 (%) 정부·시보조금(%), 기타(%)			
사업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휴대폰) : •E-Mail :			

붙임 :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사업제안자 소개」의 '제안자'는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의 '제안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당연히 작성방법도 동일하겠지요? 사업이

아닌 사업을 제안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니 소재지에는 제안자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제안자가 주민모임일 경우에는 작성 가능한 부분만 작성하면 되고요. 기입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빈칸으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주민모임'의 경우에는 '제안자'와 '소재지', '대표자', '주민모임 연대서명' 그리고 '사업담당자'란이 필수 기입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에요. 단지 주민모임 '연대서명'의 경우 별지를 첨부해서라도 자세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주민모임 연대서명'란만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상세히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 소개서와 함께 단체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작성방법

사업계획 작성방법을 보기 전에 심사 기준을 먼저 보시는 것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선정되기 위한 것이니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심사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사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효과를 파악
	④ 자발적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마을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 강화 파악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⑤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⑥ 민관파트너십	•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사업타당성은 사업계획의 '3.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③사업 현실성**은 사업계획의 '4.사업목적과 세부 목표'와 '5.세부 사업계획'을 통해 판단합니다. **④자발적 주민 참여**는 사업계획의 '3.사업목적 및 제안배경'과 '7.공동체 운영방안' 중 '(1)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그리고 '6.지역자원 협력 방안'으로 판단합니다. **⑤예산 현실성**은 '8.예산계획'과 '7.공동체 운영 방안' 중 '(2) 자부담금 마련 방안'을 통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⑥민관 파트너십**은 '6.지역자원 협력 방안'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붙임 3】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 (1) 사업지역 소개하기
 - 사업지역의 일반적 특징(주거형태, 인구구성상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 사업 지역의 사업 대상층 수
 - 사업지역에서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 종류
 - 사업지역 유사 사업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개
 - 기타 사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지역특성 등
 - (2) 우리 마을공동체(추진모임/조직) 소개하기
 - 모이게 된 동기
 - 진행하고 있는 활동 소개 등
 - (3)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 사업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 필요성
 -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 조사결과)
 - 경험적 근거
 - 기타(해당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사업지역 소개하기는 '왜' 그 지역에서 다른 사업도 아닌 그 사업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과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

다. 사업 지역에서 바로 그 사업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다른 자료는 빼고 그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 마을공동체 소개하기는 그 사업을 왜 제안자가 할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은 '사업지역 소개'의 객관적 자료로는 보여줄 수 없는 해당지역 주민의 요구 내지는 추진하게 된 배경을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 사업 목적과 세부 목표

세부 사업명	목적	세부 실행 목표	사업실행 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변화의 평가기준

*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주민모임 만들기'는 반드시 목적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목적과 세부목표는 심사뿐만이 아니라 사업 후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에서 평가의 기준에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주

오랜 고민을 거쳐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 사업 목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모임 만들기', '주민모임 안정화', '주민친밀도 증진'과 같은 내용이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환경' 등의 내용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요. '목적'이 추상적이라면 이를 이루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실행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 실행 목표'는 1년 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1년 후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를 '사업 실행 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기술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실행한 후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을 '평가의 판단 기준'에 적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 기준에 의해 사업 평가가 진행될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을 주민이 직접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죠.

5. 세부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6. 지역자원 협력 방안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전문가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기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현황'에서는 ■표 하주세요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지역자원 협력 방안'은 알고 있는 지역 자원을 전부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자원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자원뿐만 아니라 참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7. 공동체 운영 방안

(1) 의사결정기구 구성 방안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의사결정기구 구성 계획을 기록

(2) 자부담금 마련 방안

※ 자부담금 마련 방안 및 공동체 운영 자체(지원금 제외) 소요 운영비 마련 방안

의사결정 기구 구성방안은 이 모임이 단순한 단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초 제안 주민모임이나 단체가 자신의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모임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주민모임들이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그러면서도 주민모임들이 함께 공동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최초에 제안한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의 의사결정 방식과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서 1년 후 최초의 제안한 모임과 함께 새로운 주민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주민모임의 의사결정은 최초에 제안한 모임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주민모임이 독자적으로 해야겠지요.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제안한 주민모임이나 단체의 자체 사업이냐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8. 예산계획

(1)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예산구성	①신청금액	총 사업비 ①+②		
	②자부담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보조금	(100%)	(%)	(%)	(%)
자부담금	(100%)	(%)	(%)	(%)
구 분	외부활동비	시설비	업무진행비	기타
보조금	(%)	(%)	(%)	(%)
자부담금	(%)	(%)	(%)	(%)

자부담금 마련방안은 **예산계획**을 작성한 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사업지원금만으로는 어렵도 없을 것이고, 많은 부분 자부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자부담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을 모을 계획을 얼마나 충실하게 세웠느냐, 그리고 이미 모으고 있느냐가 사업의 현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세부 사업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사업비	자부담	
세부사업명	총 계				
	소 계				
	인 건 비				
	기 타				
세부사업명	소 계				
	기 타				
세부사업명	소 계				
	기 타				
공통예산	소계				
	시설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기타				

(1)사업비 구성은 **(2)세부 사업 예산서**를 작성하셔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예산서는 Part 3.부록자료 2번째 항목의 '보조사

업비 집행기준'에 나오는 사업비목(예산편성 기준표)을 참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비목에 책정할 수 있는 예산 항목'에 없는 내용으로는 지출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의 예산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예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책정의 가격도 '예산편성기준표' 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면 과예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 '예산편성기준표'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는 안됩니다. 사업비목과 보조금 사업예산편성기준표는 part 3. 부록자료 편 "2.보조금 회계처리가 어렵다면"중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p.105)에서 확인하세요.

4. 한 번에 쉽게 도움받는 방법은 없나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참여하고 싶을 때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면 원하는 도움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용설명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의 수요에 따라 돌봄과 학습, 문화, 역사, 복지, 사회적 경제영역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

을의 수요에 맞는 사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와 기관에 걸쳐 진행되게 되는데요.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마을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주민 누구나 쉽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문의하고, 참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모든 문의와 신청, 접수, 상담 등을 이곳 마을지원센터에서 일원화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을지원센터는 은평구 (구)질병관리본부 자리에 위치해있으며 오랫동안 마을살이를 해온 활동가 등이 모인 사단법인 마을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제안하거나 기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분을 위해 **마을상담원**을 파견해서 지원하고요. 초기 마을공동체를 고민하거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주민모임에 대한 맞춤지원을 하는 **우리마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을경제, 복지, 문화, 돌봄 등 각 분야별로 주민의 자발적인 계획을 제안 받아 지원하는 **서울시 분야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파견하여 마을관련 강좌를 진행하는 **마을교육**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주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엄청난 기운을 내며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줄, 서울시 마을지원센터! 그렇다면 마을지원센터,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한 마을씨 '마을상담원'

서울시 마을지원센터는 '마을을 품은 서울'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현장조사와 탐방을 통해 서울 곳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마

을공동체를 알려줍니다. 각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랐는지,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곤소곤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 주민으로 있는지, 마을의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마을지원센터는 마을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서울에서 마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마을공동체란 쉽게 말해서 뭐죠?",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다양한 궁금한 내용을 마을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마을에 대한 모든 것, 각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준비 등의 구체적 문제까지 마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곳이 마을지원센터입니다. 마을지원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마을상담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언제나 전화해도 따뜻하게 대응해주는 것을 넘어,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도움을 받고 싶다면 마을상담원에게 SOS 하세요. 마을상담원은 마을을 키워가고 싶는데 방법을 모르는 이들을 위한 기본 상담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참여방법 안내와 컨설팅까지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해줍니다. 상담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상담원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상담신청서가 접수되면 만 3일안에 상담원을 배정하고, 배정받은 상담원은 신청자와 접촉해 도움을 제공하니, 빠르고 편리하죠?!

·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친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우리 마을에 적합한 공동체 활동들을 알게 됐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실천이죠! 주민들과 만나서 함께 할 친구들을 구하고,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의 자원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하나씩 하나씩 마을을 만들어보아요. 그러다가 힘이 들 땐 행정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거죠,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우리가 행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라면 세심한 지원, 거침없는 마음씀씀이! 물론, 무조건 지원은 아니라는 거~!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방식과 내용을 지양합니다. 각 마을(공동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현장 실사와 조사 등을 통해 마을의 상황과 여건을 진단하고, 그에 걸 맞는 절차를 밟아 실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지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과 활동은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은 모름지기 주민들을 닮아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을지원센터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직접 이를 운영하고 있지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분야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프로젝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핵심 분류인 **분야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부모 커뮤니티 지원, 북카페 활성화,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마을공동체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총 17개 분야에 걸

쳐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절차는 기존의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시킨 **마을지원절차**에 따라 시행되는데요. 마을지원절차는 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직접 기획하여 제안할 수 있게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주민들은 마을지원센터만 통하시면 됩니다.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마을지원센터로 일괄 신청하면 앞서 프로세스에서 설명한 과정을 밟아나가게 되는 거지요. 특히 심사에 떨어져도 사업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재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나 먼저 이야기한 마을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 마을공동체 사업 신청 및 지원 절차



- 마을사업 제안, 계획수립, 실행,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주민 주도 시행
- 공동의 문제인식과 자발적인 추진의지가 있으면 어느 마을이나 지원가능
- 일회성 자금지원 위주의 공모방식 지양,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식 추진
- 주민의 추진의지와 마을사업의 필요성 등 현장조사 결과위주로 심사 및 지원

두 번째는 주민들을 위한 맞춤 프로젝트, **우리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어요. 2012년, 우리마을 프로젝트는 2가지 세부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최초의 주민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은 마을주민들 사이에 주체가 일부 형성되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하는 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상시 접수를 통한 맞춤형 공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밖에 마을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취득하세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부터 사업 준비를 위한 카운슬링이나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요. 마을사무국에선 전화 상담을, 마을지원실에선 현장 방문 상담도 한다는 것, 꼭 확인하세요.

· 사람이 크고 마을이 크는, '마을강사 발굴 및 파견사업'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 마을입니다. 마을은 사람때문에 가능하고 사람은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즐겁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커야 마을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살이를 하는 주민들 속에서 숨은 마을 고수를 발굴하고, 마을관련 실무교육을 통해 이들을 역량있는 강사로 육성하며 그 사람의 힘을 통해 어떤 외부적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온전한 우리 마을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업이 **마을강사 발굴 및 파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요. 1) 일반 주민들을 포함해 마을에 숨은 고수를 발굴하고, 2) 이들을 마을 강사로 육성하여, 3) 필요한 마을에 강사풀로 제공하고, 4) 이를 통해 서울 곳곳 주민이 원하는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강사의 마을강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가진

일반 주민을 발굴하고 등록하는 내용으로 마을에 숨은 고수를 찾아 마을강사로 육성하는 것이 처음인데요. 마을강사로 등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상시적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사업체 및 단체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험을 가진 자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의 강사파견 및 교육기획이 가능한 기관 등에서 1개 이상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절차를 밟은 후 마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강사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 후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파견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민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시민 모임이라면 어디서든 마을공동체 강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월 1회에 한해 앞서 등록한 마을강사가 파견됩니다. 강사비는 물론 지원이 되지요. 풀뿌리 개인이나 조직을 위한 마을 관련 심화 아카데미 역시 기획 및 진행합니다.

· 마을 속 이웃되기, '네트워크 활동'

마을에서는 이미 많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를 이뤄 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이들은 앞서 마을이라는 길을 걸어간 선구자이자, 함께 서울마을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파트너이죠. 그래서 마을지원센터는 각 지역별로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모인 마을넷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을넷에 대한 설명은 앞선 개념어사전을 통해 확인하셨죠? 마을넷의 목소리에 마을지원센터는 늘 귀를 기울입니다. 아래에서의 목소리를 행정

에 전달하고, 행정의 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지원센터의 기본 역할이거든요.

지금 마을공동체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세인거 아시죠?! 이에 마을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과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마을지원센터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담론을 만들어가고 전파시켜 나갑니다. 마을활동가들의 모임인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전국 마을지원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마을일꾼 대화모임을 기획하고 진행한답니다. 마을은 문화와 경제, 복지와 돌봄, 교육까지 삶 면면을 담고 있기에 민간단체 및 다양한 부문에 걸쳐 중간지원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시의 회와 정책토론회, 국제사례 발굴 및 해외 현장방문 등을 통한 관계망도 구성합니다. 홍보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아울러 풀뿌리의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요.

· 마을에 대한 모든 정보, 마을아카이브

마을지원센터는 교육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보가 모이는 아카이브 역할도 해요. 마을아카이브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마을아카이브 만들기를 위한 교육도 펼칠 계획입니다. 각 마을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면 함께 궁리할 수 있는 파트너 또한 마을지원센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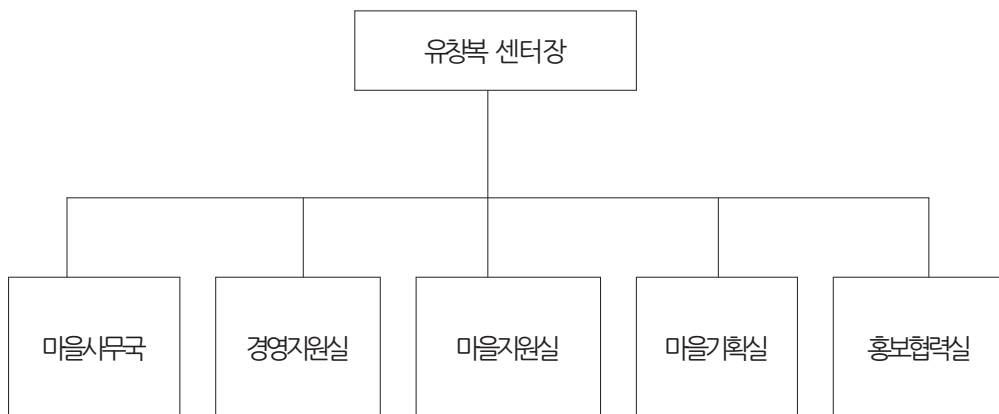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짹짹하고 신산한 도시 생활, '쉽'과 '휴식'이 필요할 때, 마을지원센터의 사랑방 **마을마루**를 찾아주세요. 서울 모든 마을공동체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이곳에 오세요. 뒹굴 거리세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만나세요. 마을 평상처럼, 마을 사랑방

처럼. 공정무역 커피도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널브러져서 오수를 즐길 수도 있어요. 오로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 운 좋으면 술 한 잔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얻어가는 재미! 마을지원센터에 오시면, 그런 마을의 풍경도 만날 수 있어요.

오해는 금물! 마을공동체는 '무조건 하자'는 형식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을 행동으로 옮겨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마을에서 익히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즐겨주세요. 그 과정에서 마을지원센터가 몸에도 좋고 마음도 즐거운 밥상을 차리는데 보조 역할을 할게요. 마을공동체를 향해 당신과 맞잡은 손이고 싶어요. 그것이 마을지원센터의 소박한 바람이라는 거~! 우리 함께 손잡고 마을공동체로 향하는 길로~!

2) 조직 구성 및 기능

· 조직도



· 대표 전화번호 : 02-385-2642 (팩스 : 02-354-9280, 홈페이지 : www.seoulmaeul.org)

· 기 능

부서명	업무내용
센터장	센터업무 총괄 및 대내외 네트워크
마을사무국	- 마을공동체 사업 심사평가 및 관리 - 주민제안 접수 및 사업서류 종합관리 - 자원사업 집행 및 점검, 현장조사 및 조사원배치 - 심사 및 평가 실무 지원, 정보공개 등
경영지원실	- 시의회 업무보고, 사무행정감사,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력체계 구축 - 인사·조직관리, 사업계획, 심사분석, 근무평정, 기관경영평가, 감사 등 - 직원복지후생, 시설관리 및 직안인검관리, 직원경조사 및 직원소통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 예산 및 회계 담당, 사대보험 및 원천징수, 자금 관리, 급여 및 수당 지급, 세무결산 및 연말정산 - 복무 및 규정관리, 문서관리, 시의회 및 외부회의 대응지원, 연간보고서 발간, 포탈관리
마을지원실	- 서울시와 자치구 중간조직 협력 체계 구축, 마을넷 활성화 - 동네 마을넷 지원, 마을토론회 및 마을 커뮤니티 지원 - 소권역 마실모임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마을관련 실무 담당, 의제별 마을넷 관리 - 마을공동체 교육 콘텐츠 기획, 마을강사관리, 교육교재개발 - 마을교육 지원, 교육자료 발간 및 지원 - 마을기록물 관리, 교육자료 관리, 마을넷 커뮤니티 지원
마을기획실	- 사업 종합 조정, 공동체 위원회 정책 지원, 센터 기획 연석회의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탁사업운영관리 - 개별의제 및 마을넷 네트워크 구축지원, 마을뱅크, 자원맵핑, 마을공동체 표준행정 절차 지원 - 신규사업 기획 및 진행, 청년 의제 발굴, 마을아카이브 자료축적, 마을행정지표 개발
홍보협력실	- 마을공동체 담론 형성지원,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협력, 연구과제 설정 및 계획 수립 및 평가 - 전국 마을 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마을지향행정 공동연구, 전국 마을일꾼 대화모임 기획 및 진행, 민간단체 및 부문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시의회와 정책토론회, 지역협력 마을만들기 대화 모임 지원, 국제사례발굴 및 현장방문 통한 네트워크 구축 - 풀뿌리 심화 아카데미 기획 및 진행, 마을지향행정 연구, 마을사례 분석 -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구축 및 개발, 소식지 발간, 뉴스레터 발행, 홍보 콘텐츠 운영, 홍보위원회 구축, 오피니언 리더 구축 - 마을아카이브 구축, 마을지원센터 기록 체계화 작업, 마을아카이브 표준 매뉴얼 개발, 마을 아카이브 만들기 교육

3) 행정기관의 센터 이용법

아직까지 행정으로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많이 낯설 수 있어요. 각 부서를 넘어 주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범위, 최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정책과정, 딱 부러지지 않는 마을공동체의 범위와 사업들. 그래서 어려우시죠?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우리 지역에는 어떤 마을활동과 자원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 시민과 함께 가는 마을지향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지도 막막하실 거예요. 그럴 때면 떠올리세요, 마을지원센터!

우선, 지역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마을교육'이 필요하다면 마을지원센터와 이야기 나누세요. 마을지원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요. 대상과 목적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부터 강사진까지, 마을지원센터가 도움을 드립니다. 공동 기획과 실행은 물론, 자치구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마을 교육을 위해 마을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교육과 더불어, 우리 자치구에 마을활동가 혹은 마을오지라퍼(마을 일 곳곳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가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궁금할 수 있겠죠. 마을지원센터에 물어보세요. 어느 지역에 누가 있는지 찾아드리고, 중간에 다리도 놔 드려요. 사람과 행정을 잇는 역할, 마을지원센터가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자치구 등 행정기관에게 마을지원센터는 협력파트너입니다.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현장 실사와 조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구체적인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자치구 마을지원센터 설립이 요구된다면,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도 가능하고요.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자로서 마을지원센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 내 마을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해 각 행정기관과 마을지원센터가 함께 활동한다면, 자신만의 색깔을 갖춘 마을공동체가 태어나겠죠?

마을의 '삼신할머니'가 되는 법, 참 쉽죠잉~

4) 시민의 센터 이용법

현재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의 마을은 무엇일까요? 마을지원센터는 이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마을공동체를 이뤄가는 동반자예요. 이미 이뤄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례들을 참조하세요. 그를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단초를 얻어 가실 수 있고요. 카운슬링이나 컨설팅을 통해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꿈꿀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마을을 알고 싶다면, 마을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내가 꾸는 꿈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감수성'을 키우는 건 어떨까요? 그건 곧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겠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 한 잔 술에 담긴 이야기, 봄밤의 냄새, 여름

날의 바람, 가을 낙엽의 낭만, 겨울밤의 따뜻함. 마을이 무르익는 풍경. 그것은 함께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많은 사회조직은 본디 서로 돕고 모자란 부분을 상호 보충해주는 동료 같은 공동체잖아요. 마을은 그것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켜줄 거고요. 서울의 다른 마을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투어 프로그램도 마을감수성을 키우는데 일조할 겁니다.

그저 시간이 허락한다면, 마을지원센터에 한 번 놀러오세요. 마을공동체가 무엇이고, 지원센터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체감하실 수 있거든요. 마을지원센터의 사랑방인 마을마루에서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며, 꿈도 그려보세요. 그것도 아니라면, 커피 한 잔 나누자고 청해보세요. 마을마루에선 마을과 마을이 만나고, 마을과 사람이 접촉하며, 사람과 사람이 이어집니다. 이젠 당신이 마을에 발을 디딜 차례입니다. 참,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을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seoulmaeul.org입니다.

PartⅢ

함께 보아요. 부록자료

1.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_신청양식 샘플
2. 보조금 회계처리가 어렵다면... _보조금회계처리 기준
3.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싶다면... _참조법령
4. 우리동네 가까운 마을공동체를 알고 싶다면... _마을넷 연락처

1. 사업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활동지원사업용】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공고사업명		부모커뮤니티 사업					
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제안자		방일숙(행복동 아이사랑 부모회)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친환경 놀이를 위한 장난감 품앗이					
	사업지역	자치구	행복구	동	마을동	세부지역	동네사거리
	사업대상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및 부모					
	사업목적	부모들이 친환경 장난감을 만드는 주민모임 만들기 좋은 책 함께 읽기 동호회 안정화 자연친화적 놀이문화를 통한 아이들의 친구 사귀기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나무, 콩, 천조각 등을 이용한 장난감 만들기, 만든 장난감 교환하기			
		좋은 책 함께 읽기		구연동화교실 운영 책추천 및 나눔 진행			
		야외놀이터		1박 2일 야외놀이 체험 캠프 진행			
사업비	내역	총계		신청사업비(원)		자부담	
		11,055천원 (100%)		4,930천원 (44.6%)		6,125천원 (55.4%)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123 - 456) 서울시 행복구 마을동 1234-56 7층					
	전화번호	876-1234		휴대폰	010-1234-5678		
	E-Mail	maeul@seoulmaeul.org					

2013 년 월 일

제안자 : _____방일숙_____ (인)

※ 온라인 접수 시 서명날인 생략 가능(추후 보완)

〈구비서류〉

1. 사업 제안자 소개(단체등록증사본 첨부) 1부
2.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1부.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사업 제안자 소개

* 제안자가 주민모임 인 경우, 작성 가능한 부분만 작성해 주세요

제 안 자	방일숙(보라매 아이사랑 부모회)			
소 재 지	행복구 마을동 1234-56 7층 (우편번호 123 - 456)			
대 표 자	방일숙 (연락처 : 010 1234 5678)			
설립 년월일	2012. 05			
설 립 목 적				
제 안 자 현 황	<i>주민모임</i>		<i>단체현황</i>	
	• 운영진수 : 5 명 • 회 원 수 : 24 명		• 상근 활동가수 : 명 • 임 원 수 : 명 • 회 원 수 : 명	
주민모임 연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 대표제안자(3인)는 ①~③번 기재 *별지첨부 가능 *단체제안자는 해당없음	① 방일숙	010 1234 5678	a@maeul.org	행복구 마을동 1234-56 7층
	② 차윤희	010 1233 5678	b@maeul.org	행복구 마을동 1234-56 6층
	③ 천재용	010 1232 5678	c@maeul.org	행복구 마을동 1234-56 7층
	윤빈	010 1231 5678	d@maeul.org	행복구 마을동 1234-56 8층
	남남구	010 1254 5678	e@maeul.org	행복구 마을동 1234-56
주 요 활 동 분 야	• • •			
전 년 도 활 동 내 용				
예 산현황	• 예산총액 : • 자원구성 : 회비(%), 사업수익(%), 기부금 등(%) 정부·시보조금(%), 기타(%)			
사업담당자	•성 명 : 방일숙 •전화번호(휴대폰) : 010 1234 5678 •E-Mail : maeul@seoulmaeul.org			

붙임 :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1. 사업명 : 친환경 놀이를 위한 장난감 품앗이

2. 사업기간 : 2013년 3월 20일~11월 30일

3.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1) 사업지역 소개하기

- 마을동은 인구 2만 5천명으로, 행복공원과 이쁜아이 초등학교가 위치함
- 행복공원 근처에 있는 동네사거리는 다세대주택 중심의 주거밀집지역
- 마을동의 인구구성을 보면 5~14세 사이의 아동수는 2,731명으로 평범한 지역임
- 행복동에는 어린이집이 2개소밖에 존재하지 않아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임(행복구 동당 평균 어린이집 7개소, 부유동의 경우 12개소 존재)
- 이쁜아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는 936명이지만 시설이 협소하여 다양한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임
- 마을동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원어민영어 교실로,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음
- 행복구문화원에서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을동에서 가기에는 교통이 불편하여(걸어서 40분 거리) 아이를 데리고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2) 우리 마을공동체(추진모임/조직) 소개하기

- 이쁜아이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알게 된 같은 반 엄마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마을동에 부족하다는 사실에 공감
- 5명의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모임으로 '구연동화 모임' 시작
- 친한 엄마들이 한명씩 결합하여 현재 15명의 엄마들이 '구연동화 모임' 진행 중

(3)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 '구연동화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친해졌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장난감 총이나 장난감 칼 등 폭력적인 놀이에 익숙해져 있음
- 이쁜아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학부모들의 40%가 아이가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90%가 친구 사귀기가 중요하다고 응답
- 학부모의 75%가 게임, 폭력적 놀이도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대안적인 놀이문화를 위한 모임이 생기면 45%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 표명

4. 사업 목적과 세부 목표

세부 사업명	목적	세부 실행 목표	사업실행 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변화의 평가기준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주민모임 만들기	'장난감 동호회' 구성	일상적 정기모임을 진행한다.	구성원 15명/정기모임 월 2회
		구성원 사이의 친밀도 증대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모임 후 사적이 수다모임 진행여부
좋은 책 함께 읽기	주민모임 안정화	구연동화 모임 확대	구성원이 증가하고 모임 횟수가 늘어난다.	새로운 구성원 5인 증가/ 정기모임 주 1회 진행
		주민 강사 배출	회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강사 4명 배출/ 주민강사가 진행한 강의 32회 진행
야외 놀이터 체험탐방	주민친밀도 증진	45명의 놀이 친구 사귀기	스스럼없이 서로 장난칠 수 있게 된다.	출발때와 돌아왔을 때의 단체사진에서 들어나는 친밀도

*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주민모임 만들기'는 반드시 목적에 있어야 합니다.

5. 세부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03.20. ~ 04.10	등교시간 리플릿 홍보 등을 통한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강좌 수 강생 모집
	04.10 ~ 11.30	월 2회씩 총 15회 전문 강사의 장난감 만들기 강좌 진행
	5, 10월	친환경 장난감 베품시장을 진행하여 회원 사이의 결속력 증진
좋은 책 함께 읽기	03.20. ~ 04.10	등교시간 리플릿 홍보 등을 통한 '좋은 책 함께 읽기' 강좌 회원 확대
	04.10 ~ 06.10	구연동화 전문 강좌 8회 진행하여 전문성 강화 및 적극적인 회원 4명을 강사로 양성
	06.10 ~ 11.30	전문 강좌 수강 학부모 중 4인의 강사를 양성하여 조별 강좌를 통해 매주 좋은 책 함께 읽기 프로그램 진행
야외놀이터 체험탐방	07.01 ~ 07.30	야외놀이터 체험탐방 준비팀 구성 및 행사 준비
	8월	1박 2일 간의 프로그램 진행

6. 지역자원 협력 방안

지원방안	이름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이쁜아이 초등학교 학부 모회	자부담 출자, 학부모 모집 논 의 중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별나라 어린이집	벼룩시장에서 장난감 부스 운 영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쑥쑥 장난감 공장	장난감 재료 협찬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전문가	방말숙 (레크레이션강사)	레크레이션 진행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강채윤 (시민단체활동가)	회계 및 결산 담당 제안 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소이(구연동화 강사)	구연동화 강좌 논의 중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기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주민자치센터	모임장소 제공 논의 중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행복공원	벼룩시장 장소 제공 제안 예 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참여확정 ☐ 논의 중 ☐ 제안예정

* '현황'에서는 ■표 해주세요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7. 공동체 운영 방안

(1) 의사결정기구 구성 방안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의사결정기구 구성 계획을 기록

2013. 3 : '행복동 아이사랑 부모회'의 제안으로 초기 참여단체 및 참여자 모집을 통한 '친환경 놀이를 위한 장난감 품앗이(이하 품앗이)' 준비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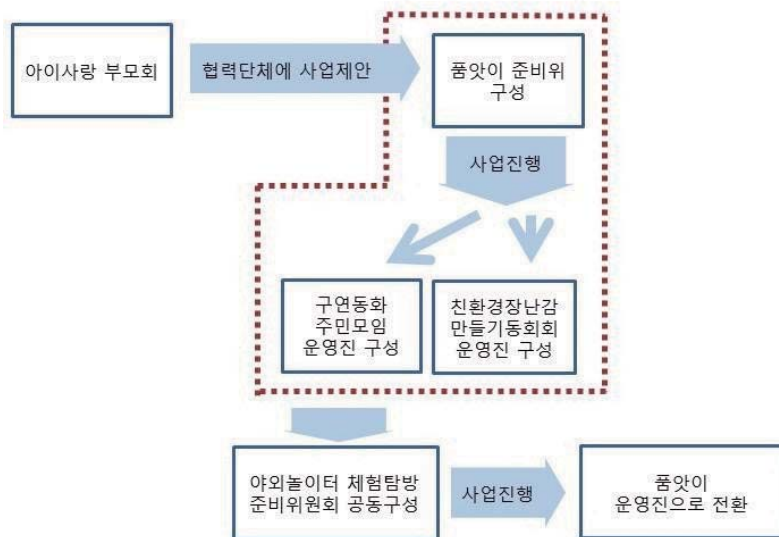
2013. 4 : '보라매 아이사랑 부모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존의 '구연동화' 모임을 확대하여 '구연동화 주민모임' 발족 및 운영진 구성

2013. 6 :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로 구성된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동호회' 결성 및 운영진 구성

2013. 7 : '구연동화 주민모임 운영진'과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동호회 운영진', '품앗이 준비위'가 공동으로 '야외 놀이터 체험 탐방 준비위원회' 구성

2013. 8 : '야외 놀이터 체험 탐방 준비위원회'를 품앗이 운영진으로 전환

〈의사결정 기구 구성 흐름도〉



(2) 자부담금 마련 방안

※ 자부담금 마련 방안 및 공동체 운영 자체(지원금 제외) 소요 운영비 마련 방안

전체 자부담 수입 : 6,450천원

초기 출자금 : 800천원

'품앗이 준비위원회' 참여 단체 출자금 : 200천원×3단체=600천원

'품앗이 준비위원회' 참여 개인 출자금 : 20천원×10명=200천원

참여자 회비 : 5,250천원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수강생 회비 : 10천원×15명×8개월=1,200천원

'좋은 책 함께 읽기' 회원 회비 : 5천원×20명×8개월=800천원

놀이체험탐방 참여자 참가비 : 50천원×45명×1회=2,250천원

품앗이 및 준비위 운영위원 개인 회비 : 20천원×10명×5개월=1,000천원

기타 : 400천원

벼룩시장 장난감 판매수입 : 200천원×2회=400천원

8. 예산계획

(1)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예산구성	①신청금액	4,930	총 사업비 ①+②	11,055	
	②자부담	6,125			
구 분	합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보조금	4,930(100%)	2,300(46.7%)	80(1.6%)	950(19.3%)	
자부담금	6,125(100%)	3,000(49.0%)	0(0.0%)	875(14.3%)	
구 분	외부활동비	임차료	시설비	업무추진비	기타
보조금	1,600(32.5%)	(%)	(%)	(%)	(%)
자부담금	2,250(36.7%)	(%)	(%)	(%)	(%)

(2) 세부 사업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사업비	자부담	
	총 계	11,055	4,930	6,125	
친환경 장난감 만들기	소 계	2,950	2,275	675	
	인 건 비	1,500	1,500		전문강사 : 1,500 - 100천원×1명×15회
	사업진행비	1,450	775	675	장난감 재료구입 : 675 - 3천원×15명×15회 벼룩시장 행사용품 구입비 :600 - 300천원×2회 리플릿 : 175 - 350원×500장×1회
	외부활동비				
좋은 책 함께 읽기	소 계	3,975	975	3,000	
	인 건 비	3,800	800	3,000	전문강사 : 800 - 100천원×1명×8회 주민강사 : 3,000 - 50천원×2명×30회
	사업진행비	175	175		리플릿 : 175 - 350원×500장×1회
	외부활동비				
야외놀이터 체험 탐방	소 계	4,050	1,600	2,450	
	인 건 비				
	사업진행비	200		200	회의비 : 200 - 2천원×10명×10회
	외부활동비	3,850	1,600	2,250	숙박비 : 800 - 80천원×10실×1회 교통비 및 보험비 : 800 식사 및 간식 : 2,250 - 10천원×45명×5회
공통예산	소계	80	80		
	시설비				
	사무관리비	80	80		사무용품 구입비 : 80 - 20×4회
	업무추진비				

2. 보조금 회계처리가 어렵다면...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이 장은 풀어쓰는 과정에서의 오독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 근거

□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 예산사업일지라도 자치구에서 집행할 경우(협약서상의 "갑"이 자치구청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자치구청장이다.
- 다만,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및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작성서식(예시) (첨부분서 1, p.111)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반드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현금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 인건비성 수당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강사비 · 회의참석비 · 원고료 · 발표료 · 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 ※ 원천징수 방법 (첨부분서 3, p.113)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 · 생년월일 · 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첨부분서 4, p.116)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첨부분서 2, p.112)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 '계약의 대행'제도의 활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

약에 대해서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자부담 비용 부담

- 자부담율은 원칙적으로 전체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하되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인 건 비(8)	①공간관리자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관리비(4)	①공공요금(전기, 수도, 전화, 가스, 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진행비(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 간식, 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활동비(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 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시 설 비(4)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업무진행비(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기 타	①기타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인건비》

- 마을사업으로 인해 생성된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공간관리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전체 보조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주민제안 대표제안자(3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주민제안 일반참여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출결의서상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특성상 마을과 친숙한 특정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
- 외부에서 책임자를 선정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예산의 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주민제안 일반참여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마을활동가의 강사수당 산정기준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되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인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위비목명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비 고
공간관리자 인건비	- 월 120만원 이내(월 20일근무 기준) - 사업별 최대 8개월까지만 지급	- 구체적 근무조건은 상호 계약을 통해 확정 - 근무내역 증빙 (근무대장 작성)
단순인건비	- 시간당 5,000원(일 8시간 이내) - 특정인이 주당 15시간 이상 불가	* 지출결의서 작성시 구체적 과업내용, 사진 등 첨부

- 허위로 인건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각종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는 당해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없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이 원칙이며 ④기타에 편성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무관리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진행비》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 등을 편성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회의를 위한 비용 등을 사업진행비로 편성할 수 없다.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한다.

《외부활동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발표회 참가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보조사업자는 외부활동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식대, 숙박비용 등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된다.

《시설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자산취득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의 구입에 한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업공간은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가 확보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주민주도의 원활한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 임차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임차료(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도 해당)는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없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안정적인 자체공간 확보를 통해 월임차료를 최소화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 상시임차료의 지원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명의를 협약서상 "갑"으로 한다.(보조사업자의 자부담액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하되 그 지분을 명시)
- 자치구에서 기간이 경과하여 환수한 상시임차료는 서울시에 반납한다.
- 협약체결 시 "시설비 집행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협약서상에 표기해야 하며 실제 보조금 집행 시 담당공무원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비의 6%)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업무진행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의 집행방법은 다른 사업비와 같다.

《기 타》 상기 비목 이외에 필요한 예산편성 시 사용한다.

〈첨부 1.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작성예시〉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000 사무국장 000 간사 000(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 00- 00

시행일자 2012. . 00

(경유)

받 음 00구청장

참 조

선			지	
람			시	
접	일자	.	결	
수	시각	:	재	
	번호		·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1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마을안전망 구축)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1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0000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코
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000운동 국제협력 증진 심포지엄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박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
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홍보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교통비	600,000	-	감600,000	
사업진행비(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숙박비 25,000×3명×16박
계	1,850,000	1,850,000	-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00 주민모임(단체) (대표자 날인)

〈첨부 2.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출강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 4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X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첨부 3.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 단순인건비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 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로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로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
 $350,000\text{원} - (350,000\text{원} \times 0.8 = 70,000\text{원}) = 280,000\text{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text{원} \times 0.2(\text{소득세율})=14,000\text{원}\} + \{14,000 \times 0.1(\text{주민세율})=1,400\text{원}\}$
 $= 15,400\text{원}(\text{원천징수 세액})$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자진납부서

NTS **Hi!Seoul**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V1.1.15 e-mail계정설정 프린터설정 ?

자진납부서 고지 및 채납납부서 서울시 신고납부서 [지방자치단체 포함] 제세공과금 납부서 납부서 일괄출력

자진납부서 새로작성 연적사항 저장 연적사항 조회 납부서조회 유대폰전송 e-mail전송 인쇄

(전자)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연월	결정구분	세 목		
미26	104	2012-12		16	남대문	011705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성 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점사업자등록번호)		회계연도	2012
사업장 (주소)	찾아보기					

■ 납부기한 : 2012-12-07

귀속연도 / 기분	
2012	년 귀속 12 월분
세 목 명	납부금액 가산세
기타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0

신청 방법

1. Http://www.mtax.go.kr 의 [유대폰 납부] 이용
2. ARS 1588-9342(국세사이)로 신청
3. 자진납부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유대폰으로 전송

원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내·외국인 구분</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내국인1 외국인9</td> </tr> </table>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⑨ 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 68 비과세 기타소득, ☐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해지 소득,
☐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63 제외), ☐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68·69·71~76 제외)
☐ 71 상금 및 부상 ☐ 72 광업권 등 ☐ 73 지역권 등 ☐ 74 주택임주지체상금
☐ 75 원고료 등 ☐ 76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⑯ 소득세	⑰지방 소득세	⑱농어촌 특별세	⑲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징수(보고)의무자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⑯란부터 ⑲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첨부 5.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2.6.30(토)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7.1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7.1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2. 9.24(월) 14:00 ~ 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600201-*****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011-1234-5678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2. 9. 25
홍 길 동 (서명)

2. 회의참석 수당

- 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 (※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킴이>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2.6.30(토)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명	일자 (시간)	주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6.30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킴이>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6.30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킴이>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2.6.30(토)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011-234-4567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011-256-7890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킴이>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2.6.30(토)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3.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4.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 40,000원

※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서울시민 지구지킴이〉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2.6.29(금)~7.1(일)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일수	업무	연락처	금액	서명
계	2명					320,000	
홍길순	84.2.2	6.29~7.1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123-4567	120,000	
고길순	79.2.3	6.29~7.1	3일	VIP 의전 담당	011-234-5678	120,000	
김길순	81.4.4	6.29~6.30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017-234-5678	80,000	

5.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 실비

(※ 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2.6.30(토)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6.30(토)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6. 인쇄비

○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2.6.30(토)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3. 관련법령을 확인하고 싶다면...

1)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서울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특정지역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제22조(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조금 회계처리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내용 발췌)

■ 민간경상보조(307-02)

1. 재위탁 금지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발생이자 반납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한 이자는 기

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3. 체크카드사용 원칙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
 -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수익금 처리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5. 지방계약법령 적용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민간자본보조(402-01)

1.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지방계약법령 이행 명시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3. 계약의 대행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4. 사용용도 및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 명시 : 민간자본보조 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5. 취득자산의 매각 등 승인 :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4. 우리동네 가까운 마을공동체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집 주변에 어떤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 궁금하시죠?!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기도 하고요.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마을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참여한 주민모임이나 단체 등이 약 400곳에 이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면 여러분 근처에도 이미 마을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듯 다양한 마을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마을공동체의 테두리 안에 담을지가 약간 애매해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적인 개요가 파악되고 명료하지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마을공동체가 아닌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치구별로 마을활동 네트워크 단위로 구성된 마을넷의 연락처만 넣었습니다. 마을넷은 통칭하는 표현이고, 실제 자치구마다 네트워크의 이름은 다르고 구성이나 운영방식도 다를 수 있음을 참조바랍니다. 마을넷은 마을활동의 연합 네트워크이므로 이곳을 통해 원하는 자치구의 마을활동을 알아보시고 참여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마을넷 연락처(자치구 가나다순 정리)

※ 중구와 동작구는 마을넷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나 마을넷 연합 게시판인
(<http://maeulnet.net>)에서 활동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 역	마을넷	온라인 주소
강남구	강남마을넷	http://cafe.daum.net/gangam.maeul.net
강동구	강동마을모임 동동	http://cafe.daum.net/kdtown
강북구	강북마을넷	http://cafe.daum.net/gangbuknet
강서구	강서마을넷	카페개설 준비 중 http://maeulnet.net (게시판 있음)
관악구	관악마을마당	http://cafe.daum.net/gwanakmaeul
광진구	광진마을넷	카페개설 준비 중 http://maeulnet.net (게시판 있음)
구로구	구로마을넷	http://cafe.naver.com/gurocommunity
금천구	금천마실	카페개설 준비 중 http://maeulnet.net (게시판 있음)
노원구	노원마을넷	카페개설 준비 중 http://maeulnet.net (게시판 있음)
도봉구	함께 Green 마을만들기	http://cafe.daum.net/dobonggreenvillage
동대문구	동대문마을에서 마을까지	http://cafe.daum.net/ddm-town
마포구	마포마을넷	http://cafe.naver.com/openmapo
서대문구	서대문마을넷 준비모임	http://cafe.daum.net/sdmMM

서초구	서초마을넷	http://cafe.daum.net/scmaeul
성동구	성동마을넷	http://cafe.daum.net/sdmaeulnet
성북구	성북마을	http://www.sbnet.or.kr
송파구	송파마을넷	http://cafe.daum.net/hugsongpa
양천구	양천마을넷	카페개설 준비 중 http://maeulnet.net (게시판 있음)
영등포구	영등포마을공동체 네트워크	http://cafe.daum.net/ydpnet
용산구	용산마을공동체	http://cafe.daum.net/ysmaeul
은평구	은평마을넷	http://cafe.daum.net/eptown
종로구	종로마을넷연석회의	http://cafe.daum.net/jongnonet
	종로구마을공동체 네트워크	http://cafe.daum.net/jongnomaeulnetwork
중랑구	중랑마을넷	http://cafe.daum.net/jrcoop

